

法定地選擇合意와 仲裁契約의 適用範圍

金 聖 勳*

〈목 차〉

I. 序言	3. 準據法の 選擇
II. 法定地選擇合意	4. 權限과 中立性
III. 仲裁契約	5. 强制執行
IV. 法定地選擇合意와 仲裁契約의 適用比較	V. 結言
1. 上訴權의 重要性	參考文獻
2. 費用과 迅速性	Abstract

I. 序 言

최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가간의 교역량과 해외직접투자가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크고 작은 국제무역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역당사자들도 외국기업 혹은 타 국가간의 법률적인 분쟁에 개입될 개연성 또한 크다 하겠다. 국제간의 상거래분쟁이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곳에서, 누구에 의해 법리적인 해결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法定地選擇合意(forum selection agreement)의 형성 근거는 유사한 분쟁들의 法廷地(forum)에 따른 현격하게 다른 소송의 결과에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원인이 형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原因들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간의 相異한 訴訟節次(procedure), 實體法(substantive law), 實定法(legal rules) 및 抵觸法(choice of law), 둘째 法廷地(forum)들간의 特性(character), 權限(competency), 一貫性

* 경남정보대학 강사

(consistency), 셋째 偏見(bias) 및 法定地不便(forum non convenience)의 존재 여부 때문이라 할 것이다. 法定地選擇合意(forum selection agreement)는 국제 계약 시 분쟁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하여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설정한다. 이 합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法廷地(forum)의 설정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상의 권리 및 기타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발생 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의 가능과 정당한 기대의 보호를 꾀할 수 있다.

소송과는 달리, 법관이 아닌 제3자를 仲裁人(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그 해결을 위탁하고 仲裁判定(arbitral awards)에 복종함으로써 법원의 裁判權(jurisdiction)을 배제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仲裁의 형성 근거는 양 당사자간의 중재의 실익과 능률의 인정에 있다, 本稿는 계약의 일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설정한 法廷地選擇協定(forum selection agreement) 혹은 仲裁契約(arbitration agreement)의 適用方法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법리가 국제계약법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II. 法廷地選擇合意(forum selection agreement)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이 지니는 법적 요건과 성격으로서는, 첫째로 국제계약의 일부분으로서 분쟁발생시 계약당사자들이 지정한 法廷地(forum)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둘째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法定地選擇項目을 선택하는 명시적 표현인 法定地選擇合意가 있어야 하고, 셋째로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법정지(forum)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넷째로 法廷地選擇協定(forum selection agreement)은 크게 獨占主義(exclusive)와 非獨占主義(non-exclusive)가 있다. 獨占主義는 오직 계약당사자들의 협정에 의해서 지정한 法廷地(forum)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強制條項이다. 非獨占主義는 협정에 의해서 지정한 法廷地(forum)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채무자의 본국법과 같이 계약에 관련이 깊은 연결소를 매체로 하여 法廷地(forum)를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이 갖고 있는 효율성을 살펴보면, 첫

제 계약당사자가 비교적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본국의 법원을 분쟁에 개입될 개연성에 대비하여 다른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法廷地(forum)로 지정할 수 있으며, 둘째 계약당사자가 비교적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본국의 법원을 法廷地(forum)로 선정할 것을 다른 계약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중립성이 있는 제3국을 法廷地(forum)로 합의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셋째,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의 설정으로 인하여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法廷地(forum)에 중복적으로 제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그로 인한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시간의 손실 및 과도한 소송비용의 이중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넷째, 계약당사자들이 그들의 分爭(dispute)을 최종적으로 審理할 法廷地(forum)를 합의하여 선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계약상의 관계설정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한다. 특히, 抵觸法項目(choice of law provision)이 채택될 경우 당사자의 抵觸法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정당한 기대의 보호란 요청에 합치하고 거래의 안정과 원활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다섯째, 계약당사자가 訴訟節次期間 및 訴訟費算定을 예측하여 경제적으로 實益이 있는 法廷地(forum)를 다른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국제계약에서 분쟁에 개입될 개연성에 대비한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의 설정은 당사자자치주의에 입각한 法廷地(forum)의 선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특정 국제거래시에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의 採擇目的은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당사자의 승소 가능성이 큰 法廷地(forum)를 지정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의 營業活動場所(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주로 선정되는데 그 까닭은 해당지역에 대한 친근성, 법정접근의 편의성과 소송 절차 및 결과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 하겠다. 法廷地(forum)의 채택 여부는 당사자들의 지명도, 이전거래실적, 향후 분쟁의 발생소지, 判決의 強制執行 및 訴訟節次(procedure)의 柔軟性 등을 두고 판단하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III. 仲裁契約(arbitration agreement)

仲裁가 지니는 법적 요건과 성격으로서는, 첫째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중재를 선택하는 명시적 표시인 중재계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분쟁의 객체인 분쟁대상은 당사자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어야 하며, 셋째로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해야 하며, 넷째로 중재에서 패한 일방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仲裁契約(arbitration agreement)은 많은 부분에서 法廷地選擇協定(forum selection agreement)과 유사한 점이 있다. 國際仲裁契約은 仲裁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 합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仲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訴訟節次에 맡기지 아니하고 제3자를 仲裁人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仲裁人의 判定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仲裁節次(arbitration procedure)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국가는 중재제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상 당사자의 의사에만 일임하지 아니하고, 공익과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仲裁契約, 仲裁節次 및 仲裁判定에 대하여 立法措置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仲裁契約(arbitration agreement)이 갖고있는 효율성을 살펴보면, 첫째 仲裁은 당사자간의 自由合意에 의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정확한 판정을 도모할 수 있다. 상사관계는 상관습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에 귀속되는 법관의 판단보다는 상거래의 실정에 정통한 중재인의 판단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둘째, 이는 非公式的인 절차로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은 국가공권력의 발동이므로 국가 내에서만 그 효력을 미치나, 仲裁判定은 仲裁人과 사건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된다. 셋째, 소송과정은 3심제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가 상소수단을 남용하여 무리한 지연작전을 쓸 염려가 있으나, 仲裁은 仲裁契約이나 仲裁法에 따라 약정된 기간 내에 진행되며, 仲裁判定은 單審制를 택하므로 법원의 確定判決과는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어 항소할 수 없다. 넷째, 해당 분쟁의 진행절차가 非公開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업상의 비밀과 대외신용의 계속유지가 가능하다. 다섯째, 중재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므로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선임료 등 많은 부대비용 및 시간이 훨씬 절감된다. 여섯째, 內國仲裁判定은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承認되고 強制執行이 보장된다

IV. 法定地選擇合意와 仲裁契約의 適用比較

1. 上訴權의 重要性

국제계약시에 분쟁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하여 설정할 수 있는 法定地選擇合意와 仲裁契約은 국제거래상의 안전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택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제를 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 호소함으로써 私人的 爭訟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인 소송은 민법, 상법 등의 實體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 또는 이해의 충돌로써 나타난다. 法定地選擇協定(forum selection agreement)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법원의 선정과 더불어 비교적 친숙한 자국의 법률과 판례에 구속됨으로써 그 법적 안정성이 도모된다. 그러나, 소송은 법원의 판단에 귀속되며, 訴訟節次 및 判決의 형평성 그리고 공공정책에 의해 제한된다.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사업의 내막이 외부에 알려질 염려가 있다.

중재인의 仲裁判定 또한 보편적으로 중재지 이용할 중재기관, 중재규칙 또는 준거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재계약이 있으면 당사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계약을 무시하고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妨訴抗辯(plea in bar)에 의하여 그 訴는 다툼의 여지없이 却下된다. 중재는 소송의 경우와 달리 법률과 판례에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그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지 않는다. 재판의 3심제도는 패소한 당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재판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재는 단심제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하는 난점이 있다.

2. 費用과 迅速性

法定地選擇協定(forum selection agreement)은 국적이 다른 당사자간에 화물의 장소적 이동을 수반하는 국제거래상의 분쟁에 대하여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

를 선정하여 특정국이 裁判管轄權(jurisdiction)을 갖고 법률과 판례에 의해 구속됨으로써 법률의 정신과 실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소송과 중재를 비교해 볼 때, 중재는 분쟁을 비교적 迅速하고, 經濟的으로, 중재인의 專門性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중재인은 법률에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양식에 따라 판정하므로 판정기준이 흐려져 때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의나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그 공정성의 보장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중재에 있어서는 同種의 사건도 중재인이 다름에 따라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3. 準據法の 選擇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실질문제와 방식문제가 구별된다. 한국의 국제사법에서는 계약, 즉 채권적 법률행위의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9조, 법률행위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1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국제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포함하는 채권적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어떤 계약의 효력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가는 契約準據法の 결정의 문제이며 法定地의 국제사법에 따라 판단된다. 각국의 국제사법은 계약당사자 자신이 그 계약을 최종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법선택 조항에 의해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한국법에 따른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되어 있고 법정지가 미국의 법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미국의 법원은 그 법원이 소재한 州의 國際私法(private international law) 또는 抵觸法(conflicts of law)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대로 한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그 법의 적용이 해당 주의 기본적 공서(예를 들면 보험계약자 보호, 건설하청, 부동산거래, 경쟁적 사업회피 약관 등의 강행규정에 의한 규제)에 反하는 한 한국법은 배제된다. 또 국제투자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미국의 법원은 외국국가의 수용행위 등에 대한 當否의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국가행위이론”이 “特別抵觸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法定地選擇合意를 계약의 일부로 채택 할 경우, 분쟁 발생시 특정 국가의 법정지가 국제거래상의 분쟁에 관하여 법률과 판례에 의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으나 그 사안에 대한 법정경험의 미숙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관련사안

의 사실(fact)과 증거법에 의한 관련법규조항을 법정지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과 이에 관한 법원의 충분한 이해력여부 등이 실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仲裁契約은 계약당사자들이 각자 자신에 유리하도록 자국의 영토에서 자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가 진행되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중재계약을 수월하게 성립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설중재기관은 외국의 상설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체결한다. 미국중재협회와 체결한 韓美商社仲裁協定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은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1974년 12월 1일자 韓美商社仲裁協定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당사자들은 이에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仲裁를 국제사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규제하는 法的 仲裁와 중재인에게 중재절차를 자유로이 적용케 하는 友誼的 仲裁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법상 중재인에게 위임되는 모든 절차와 권한은 당사자의 합의의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은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법적 제한을 별로 받지 않고 있다. 원래 중재인의 권한은 당사자와의 중재인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계약은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은 아니다. 중재인은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는 별개 독립의 지위에서 판정을 해야 하므로 중재인계약은 일종의 특수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위험이 많다.

4. 權限과 中立性

法廷地選擇協定(forum selection agreement)의 경우 선정된 法廷地(forum)에서 법률과 판례에 구속되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만 仲裁의 경우 중재인은 법률에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양식에 따라 판정하므로 판정기준이 흐려져 때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의나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판정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그 공정성의 보장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중재에 있어서는 동종의 사건도 중재인이 다름에 따라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재인은 법률에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양식에 따라 판정하므로 판정기준이 흐려져 때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의나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판정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그 공정성의 보장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중재에 있어서는 동종의 사건도 중재인이 다름에 따라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

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5. 強制執行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법원의 確定判決(final judgement by court)은 당사자에게 사적이고도 실체법상의 의무부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경우 상대방과 그 法域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국의 공권력이 상대국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중대한 장애가 있고 나아가 強制執行도 하기 어렵다. 국적이 다른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명시적인 합의나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條約(treaty) 없이는 자국의 既判力이 상대국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의 설정은 당사자자치주의에 입각한 法廷地(forum)의 선정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장한다.

중재판정은 판결과는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집행력이 없다. 따라서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를 얻기 위해서는 따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 원래 중재판정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법률상대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므로 한번 형식적 확정애 이른다면 당사자는 그 판단내용에의 만족 여부를 막론하고 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그 이후에는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래 판결에 있어서의 既判力 思想은 국가사업기관의 공권적 판단에 기한 법안정성사상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것을 중재판정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확실적인 법안정성은 때때로 현저한 위법을 내포하고 있는 판정을 번복시켜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시키려 한다. 중재판정취소의 訴(중재법 제13조)는 이러한 既判力의 형식적 확실성과 구체적 타당성과의 마찰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V. 結 言

法定地選擇合意(forum selection agreement)는 국제계약시 분쟁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하여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설정한다. 이 합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法廷地(forum)의 설정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상의 권리 및 기타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발생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과 정당한 기대의 보호를 피할 수 있다. 특정 국제거래 시에 法廷地選擇項目(forum selection clause)의 採擇目的은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당사자의 승소 가능성이 큰 法廷地(forum)를 지정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의 營業活動場所(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주로 선정되는데 그 까닭은 해당지역에 대한 친근성, 법정접근의 편의성과 소송절차 및 결과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 하겠다. 法廷地(forum)의 채택 여부는 당사자들의 지명도, 이전거래실적, 향후 분쟁의 발생소지, 判決의 強制執行, 및 訴訟節次(procedure)의 柔軟性등을 두고 판단하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어떤 계약의 효력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가는 契約準據法의 결정의 문제이며 法定地의 국제사법에 따라 판단된다.

각국의 국제사법은 계약당사자 자신이 그 계약을 최종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法定地選擇合意를 계약의 일부로 채택 할 경우, 분쟁 발생 시 특정 국가의 법정지가 국제거래상의 분쟁에 관하여 법률과 판례에 의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사안에 대한 법정경험의 미숙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관련사안의 사실(fact)과 준거법에 의한 관련법규조항을 법정지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과 이에 관한 법원의 충분한 이해력여부 등이 실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법관이 아닌 제3자를 仲裁人(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그 해결을 위탁하고 仲裁判定(arbitral awards)에 복종함으로써 법원의 裁判權(jurisdiction)을 배제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仲裁의 형성 근거는 양 당사자간의 중재의 실익과 능률의 인정에 있다. 仲裁契約(arbitration agreement)은 많은 부분에서 法廷地選擇協定(forum selection agreement)과 유사한 점이 있다. 國際仲裁契約은 仲裁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 합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仲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訴訟節次에 맡기지 아니하고 제3자를 仲裁人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仲裁人의 判定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仲裁節次(arbitration procedure)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국가는 중재제도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상 당사자의 의사에만 일임하지 아니하고, 공익과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仲裁契約, 仲裁節次 및 仲裁判定에 대하여 立法措置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

송과 중재를 비교해 볼 때, 중재는 분쟁을 비교적 迅速하고, 經濟的으로, 중재인의 專門性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중재인은 법률에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양식에 따라 판정하므로 판정기준이 흐려져 때로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의나 주관의 개입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그 공정성의 보장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중재에 있어서는 同種의 사건도 중재인이 다름에 따라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參 考 文 獻

1. Bianca, C. M and Bonell, M. J.(1987),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e, pp. 54~72.
2. Gary B. Born.(1999),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pp. 22~32.
3. 이은섭, 국제통상거래법 422면.
4. Williston.(1975), Williston on Contracts, pp. 71~75.
5. Benjamin, J. P.(1931), A Treatise on the Law of State of Personal Property, 7th ed., pp. 266~280.
6. Cheng, Chia-Jui(1990), Basic Documents on International Law, 2nd revised ed., Martinus Nijhoff Publisher, pp. 152~196.
7. Dolan. Jhon F.(1993),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2nd ed., Butterworths, pp. 53~56.
8. Uniform Commercial Code 1203.
9. 고범준(1991), 국제상사중재법, 182면
10. 서헌제(1995), 통상문제와 법, 98~101면
11. Fessler and Loiaux's Cases and materials on Contracts, Little Brown and Co., 1991, pp. 63~71.
12. Summers and Hillman's Contract and Related Obligation., West Publishing Co., 1987, pp. 235~261.
13. Cooley, John W.(1997), Arbitration Advocacy, pp. 29~31.
14. Bergstein., Eric E., Compiler and e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p. 231~235.
15. Buhring-Uhe, Chritian(1999),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p. 15.
16. Freeman, Michael(199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 12.
17. Parker School of Foreign and Comparative Law, Columbia University, World Arbitration Reporter, 1986, p. 15.
18. Sanders, Pieter and Albert Van den Berg,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1988, p. 10.

19. Carbonneau, Thomas E., ed., International Forum Selection Agreement, p. 15.
20. Simmonds, Kenneth R., ed., Forum Selection Agreement., p. 11.
21. Clifford Larsen.(1998), Forum Selection Clause., Juris Publishing ; London : Sweet and Maxwell, pp. 49~56.
22. Derek Roebuk.(1997), Sources for the History of Arbitration, 14 Arbitration International, pp. 237~43.
23. Janet S. Zargorin., 17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 pp. 233~254.
24. Grace Park & Alice Hill.,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 William S. Hein & Co., 1989, pp. 23~25.
25. Jack J. Coe, Jr.(1999),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Commentary and Materials., 2nd ed., Ardsley, Publishing Co, p. 1,200.
26. Yves Dezalay & Bryant G. Garth., Forum Selection agreement, p. 22.
27. John Fellas., Commercial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p. 37.
28. Debbs Fer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ceana Publication, 1999, pp. 47~52.
29. Alan Redfern.(1987),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p. 55~57.
30. Pieter Sanders.(1998), Claus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 p. 27.
31. W. Laurence Craig(1984),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Oceana Publications, pp. 48~58.

Abstract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Kim, Sung-hoon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Recent decades have seen an unparalleled expansion of global trade and investment. Business enterprises of every description find themselves entangled in legal proceedings with foreign companies or government entities. Thus, the costs of these proceedings and the consequences of losing are often substantial. Almost, every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oversy poses a critical preliminary question - "where, and by whom, will this dispute be decide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often decisively affects a dispute's eventual outcome. It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between de minimis damages and a multimillion dollar award. The same dispute can have materially different outcomes in different forum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forum selection,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ten include contractual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in their agreements. These provisions significantly reduce the uncertainties inher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can offer a substantial measure of partisan advantage. as a consequence, it is almost always advisable to include a contractual dispute resolution provision in any international contract. These provisions typically take the form of : (1) forum selection clauses, or (2) arbitration agreements.